

믿음주는 소비자금융! 안심되는 소비자금융!

CLFA

한국대부금융협회

(04527)서울시 중구 소월로10, 13층(남대문로5가, 단암빌딩) / TEL 02)3487-5800 / FAX 02)6670-9670 / www.clfa.or.kr

문서번호 : 보호센터-045

발신일자 : 2016. 12. 1.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

제 목 :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 관련 협조요청

1.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협회는 등록 대부중개인(상위, 하위, 단독)이 협회에서 주관하는 정기교육(갱신)을 이수하지 않아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미이수 한 대부중개인을 협회 등록취소 하였는바, **대부금융회사 및 상위(단독)중개인은 해당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.**

『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』

제8조(교육)

- ① 협회 등록 대부중개인(상위, 하위, 단독 대부중개인 모두를 포함한다)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다음의 정기교육(금융관련 법률, 대출중개업무, 윤리교육 등)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제10조(계약해지 및 등록취소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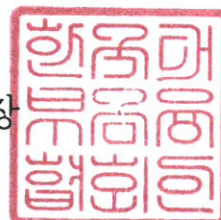
- ①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.
- 2. 제8조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
- ③ 협회는 대부중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중개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2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⑤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중개인과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업체명단 및 해지사유 등의 내역을 즉시 협회로 송부하여야 하며, 협회는 동 내역을 수시로 대부금융회사에 공개하여야 한다.

3.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**등록 취소된 대부중개업체 명단**을 홈페이지(회원전용게시판)에 게시하였으니, 해당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(단독)중개인은 등록 취소된 대부중개업체의 **위탁계약 해지 결과**를 붙임으로 작성하여 **5영업일 까지 회신(Fax, 02-6670-9670)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 : 문두환 과장 (02-3487-5800, 내선131).

붙임 : 위탁계약 해지 결과 회신양식 1부. 끝.

한국대부금융협회장



책임

■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결과 회신

상 호 명	
작 성 자	
작성부서	
연 락 처	

☐ 당사는 아래업체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 대부중개업체

순번	업체명	등록번호	위탁계약 해지일

* 계약해지 대부분개업체가 다수인 경우 '별지'로 송부바랍니다.

2016년 이월 이월

대표자 : (인)

(참고)

※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(단독)대부중개인이 정기교육 미이수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미해지시, 제제금* 부과 대상입니다.

*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11조 2항 7호

※ 해당 대부중개업체와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(단독)대부 중개인은 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.